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64,000,000	34,920,000
일반회계	952,100,000	28,563,000
특별회계	211,900,000	6,357,000
공기업특별회계	105,907,941	3,177,23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8,792,252	2,063,76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911,763	1,077,35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03,926	36,118
기타특별회계	105,992,059	3,179,762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484,479	14,53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91,286	77,739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635,021	19,051
도농공동지사업특별회계	505,202	15,156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688,060	230,642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591,356	17,741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436,624	313,09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1,513,299	45,399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50,000	1,500
배방공수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134,376	34,031
배방월천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8,844,784	1,465,344
아산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331,492	69,945
아산신정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170,050	245,102
아산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7,316,030	519,481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구축사업특별회계	3,700,000	111,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500,05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회계연도중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